

#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과 성장지원
- 지원대상 : 연 매출 3억원이하 영세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약 600개사(업체당 인건비 1명 지원)
- 지원조건 : 신규채용 근로자 3~6개월 고용유지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00만원
  - \* 3개월 유지시 150만원(50만원\*3개월) 이후 추가 3개월 유지시 50만원(인센티브)
  - \* 의무 유지기간은 3개월이며, 인센티브를 위한 추가 3개월은 선택사항
- 신청기간 : 2023. 4. 3. ~ (예산 소진시까지)

## 2. 지원절차



\* 이미 고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어도 사업참여신청 후 적격통보를 받아야 지원금 지급신청가능

### 3. 지원 대상 및 조건

#### ① (지원대상 및 자격)

소상공인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개업일1년 미만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월할 또는 일할) 3억원 이하</li> <li>○ 종사자 수 기준 :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음식·숙박·도소매 5인 미만(제조·운수·건설 등 10인미만)으로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있는 인원 기준이며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li> <li>○ 2023. 1. 1.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li> <li>○ 1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 운영 시 1개 사업장 지원</li> </ul>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이상(2005.1.1.이전출생자)이며, 2023.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li> <li>○ 1개월 실제근로시간 120시간 이상 (주휴, 휴식시간 제외)</li> <li>○ 4대 사회보험 가입 유지</li> </ul>

#### ② (지원제외)

구 분	내 용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보험 미가입자(만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li> <li>·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li> <li>· <u>근로계약서 상 1개월 실제 근무시간이 120시간 미만인 근로자</u></li> <li>· <u>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u></li> </ul>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li> <li>·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의 소상공인(지원제외업종 불임1)</li> <li>·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li> <li>·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li> <li>·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미충족 시 지원불가</li> <li>· 신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5인 이상(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이상)인 사업주</li> <li>· 최근 2년간 <u>‘21년 ~ ‘22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업체</u> *수혜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하며 동일사업주여도 지원받은업체와 새로 신청하는 업체가 다른 사업체인 경우 신청 가능함</li> <li>· <u>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u></li> <li>·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li> </ul>

## 4. 사업 참여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부터 / 사업비 소진 시 마감

□ 사업 참여 신청(접수)서류

- ①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서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④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 ⑤ 근로계약서 사본
-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전체인원)

□ 신청(접수)방법 : 팩스, 이메일

- 팩 스 : 042-380-3093
- E-mail : [sbc@djbea.or.kr](mailto:sbc@djbea.or.kr)

□ 적격여부 검토 승인

-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참여 신청서를 검토하여 10일 이내 적격여부 통보
  - 별도 요청이 없을 시 메일은 메일회신, 팩스는 문자회신으로 안내
- \*모든 서류 제출시점 기준이며, 보완서류가 있을시 접수 불가함

## 5.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 1차(지원금) : 고용유지 3개월 이후 최대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제출
- 2차(인센티브) : 추가 3개월 고용유지(고용일로부터 6개월 유지) 후 최대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금 및 인센티브 신청서류 - 고용유지 3개월 이후 작성, 서류발급

- ①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② 지원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명의)
- ③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전체인원)
- ⑤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신청방법** : 사업 신청 방법과 동일

□ **지원금 지급**

- 사업주가 제출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2주 이내 지급
- 별도 요청이 없을 시 메일은 메일회신, 팩스는 문자회신으로 안내
- \*모든 서류 제출시점 기준이며, 보완서류가 있을시 접수 불가함
- \*폐업, 관외이전, 4대보험 미유지 및 체납, 근로계약서 상 금액 미만지급, 최저임금 미만지급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미지급

## 6. 유의사항

□ **종사자 수 확인**

- 신규 고용 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최대 4인(제조업, 건설·운수업은 9인)까지 가능하며 예외없이 4대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어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신청 당시 종사자 수 기준이 초과됨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소상공인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 지원 사업 신청 시부터 지원금 지급 신청 시까지 종사자 수 기준이 유지되어야 함

□ **연매출 3억원 이하 확인**

- 연 매출 확인은 2022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2023년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전월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함
- 연간 매출액 월할 계산은 개업월을 기준으로 환산함
- 2022년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2022년 사업 기간의 매출액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여 연간 매출액을 환산함
- 2023년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2023년 월별 매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여 연간매출액을 환산함

- 사업신청 시 매출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금 신청 시 매출증빙자료 필수 제출이며 제출 전월까지 기준으로 연간 환산 매출액이 3억원 초과일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 됨

\*(월별 매출 자료) ①신용카드매출자료 ②전자(세금)계산서 매출내역  
③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3종 제출

## □ 근로자 고용유지 및 중도 퇴사

- 고용유지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 근로시간 : 1개월 실제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신규 고용 근로자가 고용 후 3개월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 :
  -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으로 재신청을 통하여 적격여부 재승인 받아야 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됨
- 신규 고용 근로자가 고용유지 3개월 이후, 지원금 지급 전 퇴사한 경우 :
  -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일자, 상실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4대보험 각각의 사업장가입자명부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신규 고용 근로자 대상을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
  - 지원근로자 중도 변경할 수 없음
  -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은 가능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 됨
- 퇴사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신청(접수)하는 경우 :
  - 최초 사업 신청 시점에는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근로자에 대해 신청 및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 지도감독

- 진흥원은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됨

□ 환수

-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기타

-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7.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042-380-3084)

- 붙임 1. 참고자료(제출서류 발급처 등)
2.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3.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

# 붙임-1

# 참고자료

<참고1 : 제출서류 발급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신용카드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4대보험 관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근로계약서	자체양식 또는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참고2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b>확인용</b>						
발급번호		발급일시		사업장 관리번호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 가입 내역(발급일자 현재기준)						1 / 1
연번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자격 취득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1		박		...		
2		김				
이 하 여 백						

<참고3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보험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재
통합납부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고용/산재) 정보	※ 고용/산재 정보는 고용/산재만 신청한 경우에 표시됩니다.		
건설공사명			
보험성립일		보험소멸일	
사업개시번호 및 공사명			
용도			

# 표준근로계약서

\_\_\_\_\_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 없음 (별도로 정할 경우 기간 명시)
2. 근로개시일 : \_\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휴게시간 : \_\_\_\_시 \_\_\_\_분~ \_\_\_\_시 \_\_\_\_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_\_\_\_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_\_\_\_요일
6. 임금
  - 시간(일, 월)급 : \_\_\_\_\_ 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_\_\_\_\_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 수당 \_\_\_\_\_ 원,   ○○ 수당 \_\_\_\_\_ 원  
     ○○ 수당 \_\_\_\_\_ 원,   ○○ 수당 \_\_\_\_\_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업 체 명 : \_\_\_\_\_ (전화 : \_\_\_\_\_ )  
 주 소 : \_\_\_\_\_  
 대 표 자 : \_\_\_\_\_ (서명)

(근로자) 주 소 : \_\_\_\_\_  
 연 락 처 : \_\_\_\_\_  
 성 명 : \_\_\_\_\_ (서명)



<참고5 :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익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표준산업분류	업종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 (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sup>2</sup>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용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용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